

「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구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의2)
- 나.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4조)
- 다. 개인정보 등의 요청·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라.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관련 규정 삭제(현행 제16조)
- 마. 재난수습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22조)
- 바. 용어, 문구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3조, 제4조, 제9조, 제14조, 제15조, 제2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
「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민원·치료·장례·심리·법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에 소방·경찰 관계자의 참여와 개인정보·개인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,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- 다만,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요청·제공·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의 오·남용이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, 이용 및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.